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교통지도과)

의안번호	제328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4. 8. 14.)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 나.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별표 1 비고2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부서협의 : 교통지도과
- 라. 입법예고 : 2024. 8. 22. ~ 2024. 8. 26.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가정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임산부가 **공영주차장²⁾**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7조의2제1항에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³⁾ 및 같은 법

1) **거주자우선주차제도** [居住者優先駐車制度]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 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한 뒤,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목적 :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도로에 드럼통, 돌, 쇠고리 등을 설치하여 이웃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로의 무료이용과 선(先) 점용자의 독점의식이 팽배하여 기초 질서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의 주차우선권과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주차 공급정책과 이면도로 유료화를 병행 추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음.

- 성북구 자동차 등록대 수 : 122,096대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현황 : 총계 5,676면(대기자수 13,219명)

2) **성북구 공영주차장 시설** : 총 14개소/1,103면

3)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4)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라고 명확히 규정함.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같은 조 제4항에서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별표 1 비고24에 임신부⁵⁾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가 정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4)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